

제5장

경제센서스 실시에 따른 시계열 유지방안 연구 -조사표설계를 중심으로-

정동욱

제1절 서론

1990년 이전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해왔으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과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90년 이후 IT·NT 등 주요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새로운 제품군과 산업의 창출은 물론 기업의 다각화 및 산업간 연관관계의 복잡화, 기업간 제휴관계 증대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육, 의료,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기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은 커지기 시작했으며, 굴뚝산업 중심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서비스화로의 진행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통계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다양한 통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그동안 신규통계 및 개선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따라 산업구조통계는 지속적인 개선·개발을 통해 1년 주기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57종으로 다양하며, 전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통계작성 방법 및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산업구조 통계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분산형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사시기, 조사주기, 조사단위, 조사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상호비교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비교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조사인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기준연도가 3,8자와 0,5자 연도로 각각 상이함에 따라 전산업에 대한 동일시점에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통계를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통계청 응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당 연간평균 응답횟수는 2002년 25회, 2005년 32회로 증가추세이며, 다양한 산업구조통계의 실시 및 개발은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이는 부실조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응답자 응답부담 및 조사 실시기관의 업무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와같은 산업구조통계의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통계 등의 기초자료로서 적기에 활용은 물론 국가기본통계의 질적향상과 비교성 증대 등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계청에서는 2007년부터 산업구조통계 통합조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 기준 경제센서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기준과 항목 및 전산업을 포괄하는 경제센서스를 5년 주기로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통계 관련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센서스 추진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통계조사간 시계열 유지방안중 조사표설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개념수립 및 조사항목 표준화를 유도하여 통합조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계열 유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계¹⁾를 대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계 10종(연간 및 총조사)에 대한 산업별,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조사표가 작성되는 주요대상을 파악하고, 통계조사별 조사표와 결과표 및 지침서를 통해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항목, 공표항목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공통항목 설계와 항목개념 등을 표준화하여 경제센서스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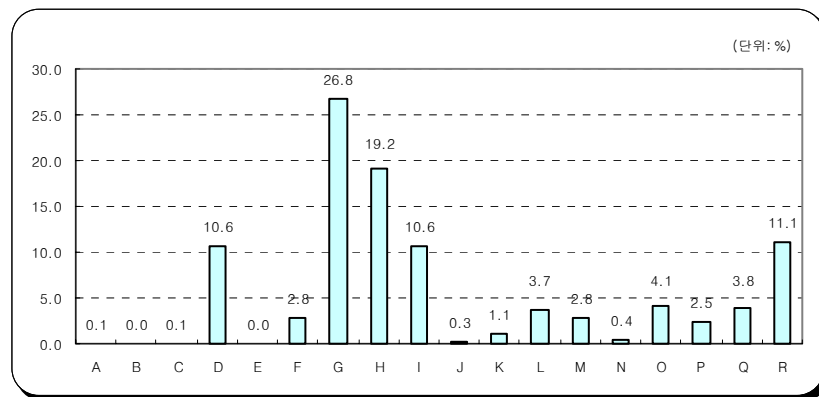
1) ①사업체기초통계조사 ②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③도소매업통계조사 ④서비스업통계조사 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⑥건설업통계조사 ⑦운수업통계조사 ⑧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⑨산업총조사(4인이하), 산업총조사(5인이상), 산업총조사(전기가스수도사업), ⑩서비스업총조사

제2절 산업구조 통계조사 현황

1. 조사대상 사업체 분포

조사대상 사업체의 분포는 조사표가 작성되는 주 대상의 속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조사표설계 단계에서 응답가능 수준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즉, 현장조사 수행에 있어 사업체의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등 구조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시험조사시 조사대상별 응답 가능 범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동 구조를 통해 기장여부를 예상하여 조사표설계의 기본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따라 200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 수는 3,226천개로서 G.도소매업과 H.음식숙박업은 전 사업체의 절반수준인 46.0%를 차지하고 있으며,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²⁾을 포함하면 73.6%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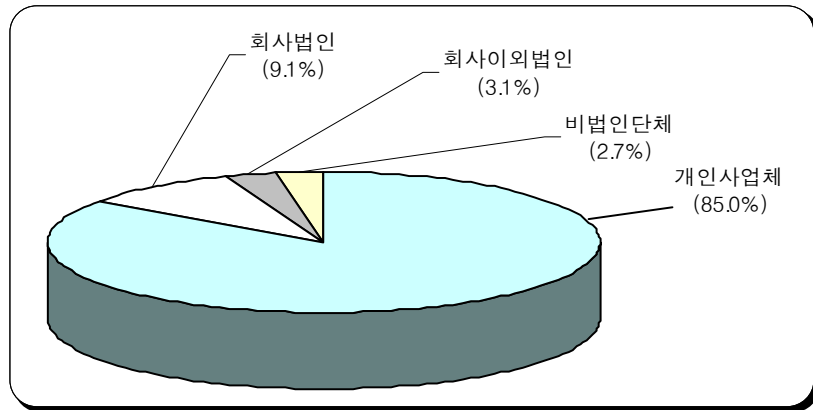


[그림 5-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비중³⁾

2) 기타서비스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조직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가 85.0%, 법인사업체는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내 개인사업체는 G.도소매업(90.5%) H.음식숙박업(98.8%) I.운수업(93.2%)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94.4%)가 90% 이상의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그림5-2], <표5-1>참조.

또한, 전 사업체중 85.0%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체(2,743천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G.도소매업(28.6%) H.음식숙박업(22.3%) I.운수업(11.7%)이 6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체중 매출액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체가 재무제표 작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조원가명세서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목간 합계를 기입해야 하는 비용항목 등 경영성과 관련 항목 설계시 조직형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림5-4]참조.



[그림 5-2]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구성비

3) 자료출처(이하의 모든 통계표 및 그림) : 통계청, 200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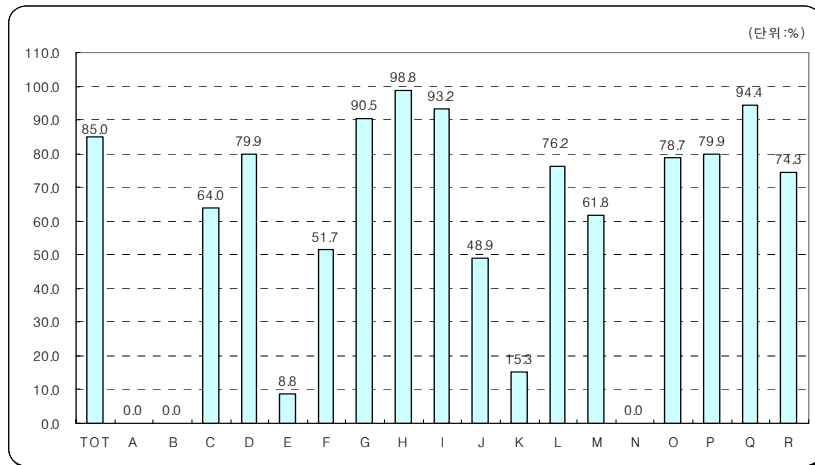
4) 사업체 기장 의무

- 개인사업체 : ①도소매업 : 3억원 이상, ②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 1억5천 이상
③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의무불이행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 법인 : 모든 사업체 기장 의무 있음
- 일반과세자 (매출액 4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매출액 48백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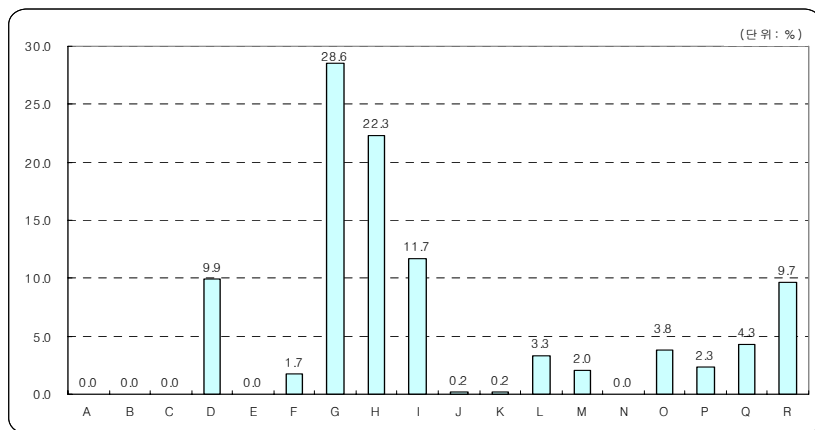
〈표 5-1〉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단위: 천개,%)

	합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3,226	2,743	294	100	88
구성비	100.0	85.0	9.1	3.1	2.7



[그림 5-3] 산업대분류내 개인사업체수 구성비



[그림 5-4] 개인사업체내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구성비

〈표 5-2〉 산업대분류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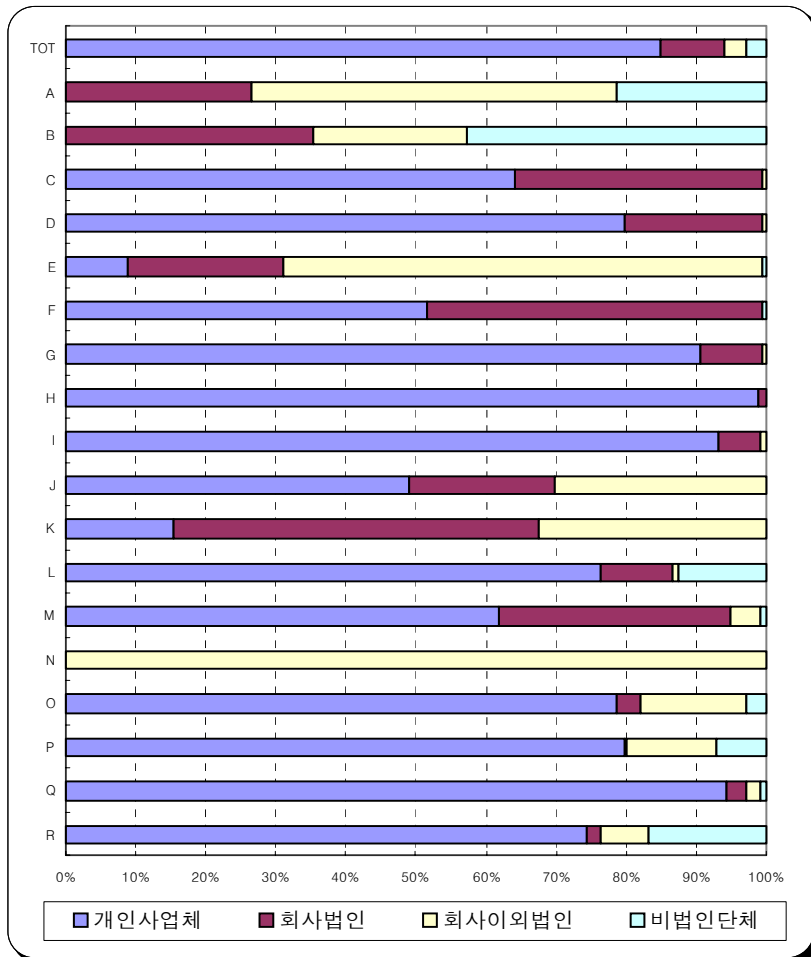
(단위: %)

	합계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전 산 업	100.0	85.0	9.1	3.1	2.7
A.농업 및 임업	100.0	0.0	26.4	52.3	21.3
B.어업	100.0	0.0	35.4	21.9	42.7
C.광업	100.0	64.0	35.6	0.4	0.1
D.제조업	100.0	79.9	19.6	0.4	0.0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0.0	8.8	22.2	68.3	0.7
F.건설업	100.0	51.7	47.6	0.2	0.5
G.도매 및 소매업	100.0	90.5	8.9	0.6	0.0
H.숙박 및 음식점업	100.0	98.8	1.1	0.1	0.0
I.운수업	100.0	93.2	6.1	0.7	0.1
J.통신업	100.0	48.9	21.0	30.0	0.0
K.금융 및 보험업	100.0	15.3	52.1	32.6	0.0
L.부동산 및 임대업	100.0	76.2	10.3	1.0	12.4
M.사업서비스업	100.0	61.8	33.2	4.1	0.9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0.0	0.0	100.0	0.0
O.교육 서비스업	100.0	78.7	3.4	15.0	3.0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	79.9	0.2	12.7	7.2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0.0	94.4	2.7	2.2	0.7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0	74.3	2.1	6.7	16.9

〈표 5-3〉 조직형태내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구성비

(단위: %)

	합계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A.농업 및 임업	0.1	0.0	0.2	1.0	0.4
B.어업	0.0	0.0	0.0	0.1	0.2
C.광업	0.1	0.0	0.2	0.0	0.0
D.제조업	10.6	9.9	22.7	1.5	0.1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1	1.1	0.0
F.건설업	2.8	1.7	14.6	0.1	0.6
G.도매 및 소매업	26.8	28.6	26.1	4.9	0.2
H.숙박 및 음식점업	19.2	22.3	2.3	0.6	0.1
I.운수업	10.6	11.7	7.1	2.2	0.3
J.통신업	0.3	0.2	0.7	2.8	0.0
K.금융 및 보험업	1.1	0.2	6.3	11.6	0.0
L.부동산 및 임대업	3.7	3.3	4.2	1.2	16.9
M.사업서비스업	2.8	2.0	10.2	3.8	1.0
N.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0.4	0.0	0.0	12.4	0.0
O.교육 서비스업	4.1	3.8	1.5	19.9	4.4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	2.3	0.1	10.1	6.5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3.8	4.3	1.1	2.7	1.0
R.기타 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1.1	9.7	2.5	24.0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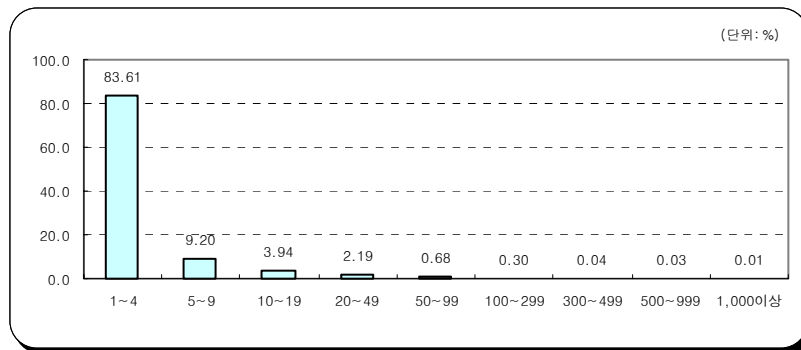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그림 5-5] 산업대분류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규모별로 사업체분포를 보면, 1~4인이하 사업체는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5~9인은 9.2%로서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92.8%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5-6], <표 5-4>참조.

즉, 우리나라 사업체중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산업내 종사자규모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G.도소매업(90.3%) H.음식숙박업(90.6%) I.운수업(94.9%)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93.6%)의 1~4인 이하 사업체 구성비가 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90% 수준이다.[그림 5-7]참조.



[그림 5-6]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표 5-4>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단위: 천개,%)

	합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3,226	2,697	296	127	70	214	9	2
구성비	100.0	83.6	9.2	3.9	2.2	0.7	0.3	0.1

동 서비스 산업에 대한 매출액규모별 사업체분포를 보면, G.도소매업 H.음식숙박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사업체중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사업체수는 각각 57.3%, 79.3%, 86.3%로서, 기장5)을 하지 않는 사업체가 70% 수준이상 임을 예상할 수 있다.

5) 사업체 기장 의무

- 개인사업체 : ①도소매업 : 3억원 이상, ②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 1억5천 이상
③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의무불이행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 법인 : 모든 사업체 기장 의무 있음
- 일반과세자 (매출액 4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매출액 48백만원 미만)

<표 5-5> 산업대분류 및 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⁶⁾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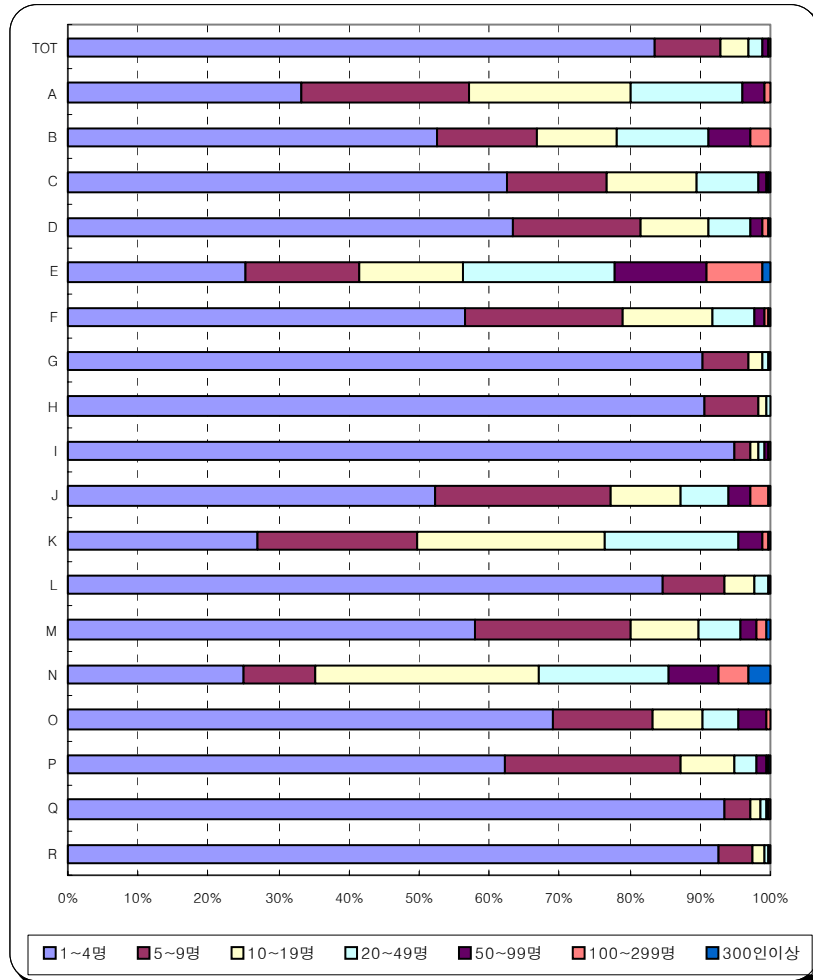
	1억원미만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합 계	68.6	22.0	9.4
도매 및 소매업	57.3	29.0	13.7
숙박 및 음식점업	79.4	18.9	1.7
통신업(64)	31.4	18.6	50.0
금융 및 보험업(65~67)	14.7	9.5	75.8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9.9	13.5	6.6
사업서비스업(72~75)	43.2	35.7	21.1
교육 서비스업(80)	68.3	18.2	1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35.3	53.5	11.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6.3	11.0	2.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88.2	9.2	2.6

사업체분포의 특징

- 조사대상 사업체 분포를 산업대분류,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로 살펴본 결과,
 - 산업대분류별로는 「GH.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비중(46.0%)이 전 사업체의 절반 수준
 - 기타 서비스업⁷⁾을 포함하면 3/4 이상이 서비스업종 사업체임
 - 사업체 구성비가 높았던 동 업종의 「조직형태」로는 개인사업체가 「종사자규모」로는 1~4인이하 사업체가 90%정도의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규모」도 1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가 주로 분포
- 사업체규모의 영세성은 별도 기장없이 사업체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는 전적으로 자영업주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규모별 특징은 산업별 조사표의 종류, 항목내 조사내용 세분화 등 조사표 설계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제3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함

6) 자료출처 : 통계청,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7) 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L. M. N. O. P. Q. R.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그림 5-7] 산업대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2. 산업구조 통계조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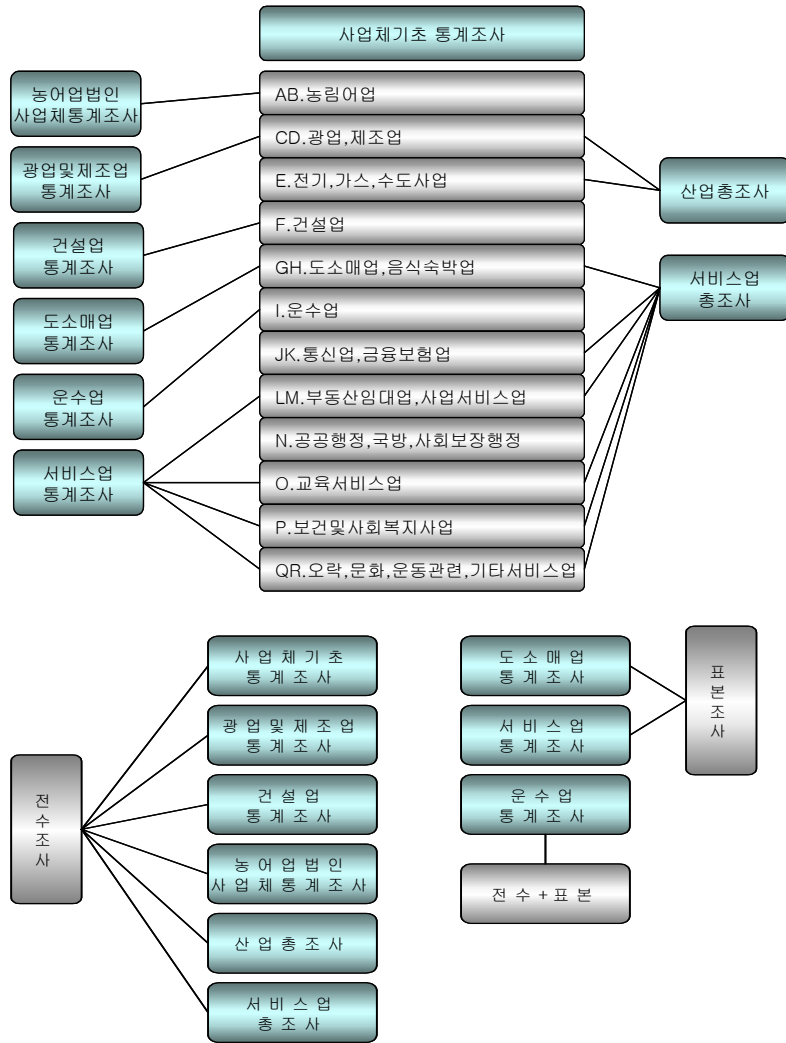
통계청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산업구조통계⁸⁾는 10종이 있다. 2.에서는 통계조사별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단위, 조사주기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가. 포괄범위 및 조사방법 비교

산업대분류별 통계조사 포괄범위를 보면,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수조사로서 전산업에 대한 기본항목을 조사하는 ①「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두 번째로 전수조사로서 특정산업에 대한 심층항목을 조사하는 ②「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표본조사로서 특정산업에 대한 심층항목을 조사하는 ③「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가 있다.

전산업에 대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기본정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조사되고 있으며, 「J.통신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한 15개 산업대분류는 연간 또는 총조사를 통해 일반사항, 고용, 수입액(매출), 비용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8) ①사업체기초통계조사 ②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③도소매업통계조사 ④서비스업통계조사 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⑥건설업통계조사 ⑦운수업통계조사 ⑧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⑨산업총조사(4인이하), 산업총조사(5인이상), 산업총조사(전기가스수도사업), ⑩서비스업총조사



[그림 5-8] 산업대분류별 포괄범위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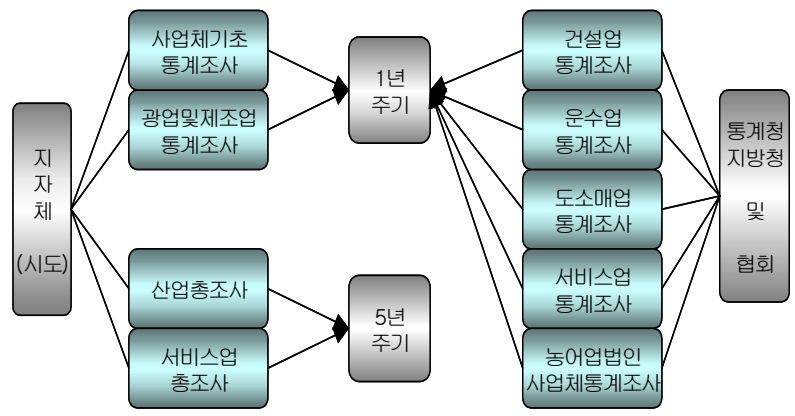
나. 조사주기, 조사단위, 조사수행기관 등 비교

다음으로는 통계조사별 조사주기 및 실지조사 수행기관을 보면, 5년

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 제9차 개정 산업분류상 대분류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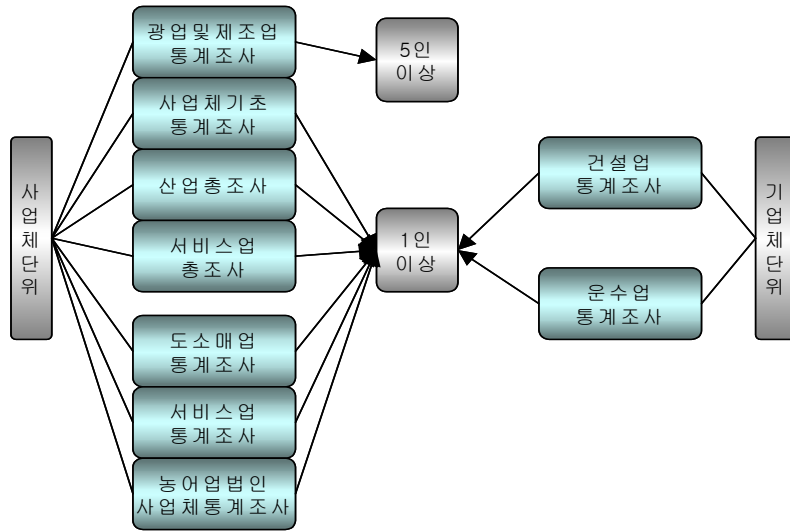
주기 총조사(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및 조사대상 사업체수가 많은 통계조사(사업체기초,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조사는 지방통계청과 관련협회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5-9]참조.

또한, 조사표 1부가 작성되는 조사단위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 운수업통계조사(기업체단위)」를 제외한 8개 통계조사는 「사업체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대상기준에서 보면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5인이상)」를 제외한 9개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그림 5-10]참조.



[그림 5-9] 조사주기 및 조사수행기관 현황¹⁰⁾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 1년주기, 지방통계청을 통한 조사 실시



[그림 5-10] 조사단위 및 대상기준 현황¹¹⁾

통계조사별 실시시기 측면에서 보면, 기초명부 확보를 위한 조사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는 3월중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 7개 조사는 결산이 완료된 2/4분기(4~6월중)에 실시되고 있다. <표 5-8>참조

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 사업체단위 (1인이상, 표본조사)

포괄범위별 통계현황

- 전산업(전수조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제외 : 개인경영 농림어업사업체,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노점, 무점포소매업, 이동음식점
군사시설(군부대, 군사학교, 군사병원 등)

- 해당 산업별(전수조사)
 - AB.농림어업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CD.광업및제조업 :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 E.전기가스수도사업 : 산업총조사
 - F.건설업 : 건설업통계조사
 - GH.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 서비스업총조사
 - I.운수업 : 운수업통계조사
 - JK.통신업,금융보험업 : 서비스업총조사
 - LM.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 서비스업총조사
 - N.공공행정및국방사회보장 : 서비스업총조사
 - O.교육서비스업 : 서비스업총조사
 - P.보건및사회복지사업 : 서비스업총조사
 - QR.오락문화운동관련및기타 : 서비스업총조사

- 해당 산업별(표본조사)¹²⁾
 - GH.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 도소매업통계조사
 - LMOPQR : 서비스업통계조사

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 제9차 개정 산업분류상 대분류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표본조사(12천개 사업체)

조사주기별 통계현황

1년 주기(8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5년 주기(2종)

-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조사단위별 통계현황

사업체단위(8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기업체단위(2종)

-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수행기관별 통계현황

지방자치단체(4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지방청(사무소) 및 협회(5종)

-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실시시기별 통계현황

3월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4월 : 서비스업총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5~6월 :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표 5-6〉 산업 및 동계조사별 포괄범위(93)

산업분류		숙업최기초 통계조사	숙업최초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공수업 통계조사	농어업별인 숙업최통계조사	산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A. 농림 및 임업	개인사업체	제외						제외		
	비법인단체							제외		
	법인							조사대상		
	0115(장남농림사업)	조사대상								
	012(대학 및 실험용 사육, 부화업)							제외		
	01422-01590							제외		
B. 어업	02X(임업)									
	개인사업체	제외								
	비법인단체									
	법인	조사대상						조사대상		
C. 광업	052X(어업관련서비스업)							제외		
	개인사업체									
	비법인단체									
	법인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D. 제조업	개인사업체									
	비법인단체									
	법인									
E. 전기·가스·수도사업	개인사업체									
	비법인단체									
F. 건설업	개인사업체									
	비법인단체									

9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 제9차 개정 산업분류상 대부분류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표 5-6〉 산업 및 통계조사별 포괄범위(계속)

산업분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공수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산업통조사	서비스업 통조사	
G도매 및 소매업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52829(노점및슈퍼이동판매업)	제외	제외						제외	
표숙박 및 음식음료업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5522(여탕음식점업)	제외	제외						제외	
I공수업	6021(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조사대상								
	6023(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6053(기타도로화물운송업)									
	6339(기타여행지원서비스업)									
	6393(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6192(화물포동업)									

〈표 5-7〉 통계조사별 개요

구 분	사업체규모 통계조사	장업체규모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1) 통계조사	운수업(2)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산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전수표본명명	전수조사	전수조사
· 조사대상의 조사격수 기준	1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조사단위	사업체									
· 조사주기	1년									
· 조사시기	3월	6-7월	3-6월	5-6월	5-6월	1-4월	4-5월	4월	6-7월	5년 (0.5차년) 4월
· 조사수행	시도	시도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협회	지방청, 조합	지방청	시도	시도
· 조사대상 사업체 및 기업체(개)	3,226,569	119,798	71,563	49,746	12,074	58,835	5,238	6,270	304,153	2,287,389

주1) 건설업통계조사

- 일반사항 및 실적(전수조사) : 일반건설등록업체, 전기공사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사업, 우수처리설계사업, 전문건설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등록업체
- 생산사항만 표본조사 : 전기공사등록업체(개인), 정보통신공사등록업체(개인)

주2) 운수업통계조사

- 전수업종(31종) : 시외버스업, 시내버스업, 고속버스업, 유상운송업(3종), 수상운송업(8종), 항공운송업(2종), 운수관련서비스업(15종)
- 표본업종(13종) : 법인택시업, 전세버스업, 마을버스운영업, 개인택시, 장의차량운송업, 일반화물, 개별용달, 개인화물, 농산물광고업, 여행사업, 주차장 운영업, 육상운송추진업, 복합운송추진업

〈표 5-8〉 동계 조사 및 수행기관별 조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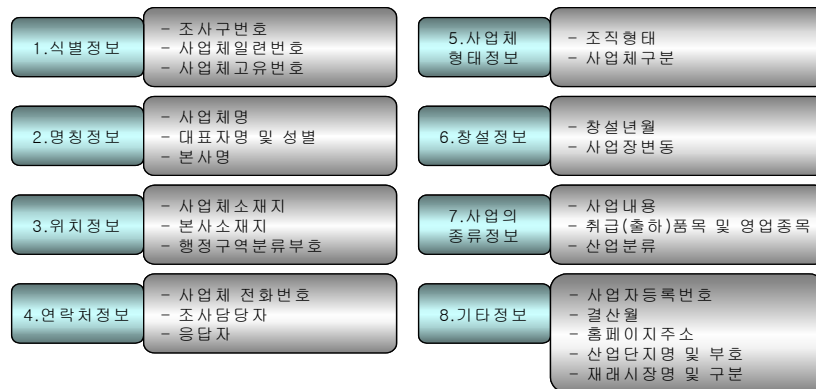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12월
시도 (지자체)			사업체기준 통계조사			상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정문과함 기술서비스업		
지방청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지방청 및 협회·조합			건설업통계조사 (지방법 : 3.15~4.13)					
								운수업통계조사 -조원 : 4.16~4.25 -지방법 : 4.26~5.15

3. 조사항목 비교

<표5-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는 i)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ii)수시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노점, 무점포소매업, 이동음식점업 iii)군사시설(군부대, 군사학교, 군병원 등)을 제외한 전산업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¹³⁾가 조사되고 있다. 제3절에서는 통계조사별 구성항목을 ①일반사항 ②고용사항 ③수입사항 ④비용사항 ⑤자산사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후, 제3절 항목 표준화 방안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일반사항

통계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다른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모집단명부 역할과 두 번째 기능으로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산업구조 파악에 있다. 조사항목중 일반사항은 첫 번째 기능수행을 위한 항목으로서 ①식별정보 ②명칭정보 ③위치정보 ④연락처정보 ⑤사업체형태정보 ⑥창설정보 ⑦사업의 종류정보 ⑧기타정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그림 5-11]과 같다.



[그림 5-11] 세부내용별 일반사항

13) 기본정보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산업분류, 매출액(합계)

일반사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기능별로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9〉

	역 할	항 목 명
기능1	-표본추출키 -집계시 특성별 그룹핑을 위한 결과표 표측 항목	③위치정보(행정구역분류부호) ⑤사업체형태정보 (조직형태,사업체구분) ⑦사업의 종류정보(산업분류)
기능2	-통계조사별 전년대비 수준분석 -조사구정보 및 모집단 DB와의 연계를 위한 연결정보	①식별정보 (조사구정보,고유번호) ②명칭정보(사업체명) ④연락처정보(전화번호)
기능3	-행정자료 활용 등을 위한 기초정보	⑥창설정보 ⑧기타정보

경제센서스 결과가 전산업의 모집단 명부보완 및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세부내용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별 일반사항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계조사별 기본사항을 8개 세부내용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5-9>와 같으며, 이를 3가지 기능측면에서 통계조사별 자료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키와 결과자료 집계시 특성별 그룹핑을 위한 결과표 표측 항목으로 활용되는 「기능1」 관련항목중 i)행정구역분류부호는 「건설업통계조사」를 제외한 모든 통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고, ii)조직형태는 「산업총조사(전기가스수도사업, 4인이하 광업및제조업)」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며, iii)사업체구분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산업총조사(전기업)」에서만 조사되고 있고, iv)산업분류는 모든 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통계조사별 사업체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1대1로

연결만 가능하다면 관련항목중 통계조사별로 미조사된 항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산업에 대한 동 정보를 수집 가능하다.

통계조사별 전년대비 수준분석과 조사구정보 및 모집단 DB와의 연계를 위한 연결정보로 활용되는 「기능2」 관련항목중 v)조사구정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1년주기), 서비스업총조사(5년주기)」에서만 활용되고 있고, 기타 조사에서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vi)사업체명 및 전화번호는 모든 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iv)조사구정보는 대규모조사 수행시 대상사업체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도가 높으며, 전입전출이 빈번한 산업의 사업체를 장소로 고유화하여 관리하는 정보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대규모조사인 두 조사¹⁴⁾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구정보는 경제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조사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준비조사 및 명부확보와 공통조사항목 선정시 조사구정보를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정보에 해당되는 「기능3」 관련항목 중 vi)창설년월은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표본조사)」를 제외한 모든 통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구정보를 활용한 사업체의 장소고유화 보조정보로 활용도가 높은 vii)사업장변동은 명부관리 성격이 강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동 조사와 병행실시한 「서비스업총조사」에서만 조사되고 있으며, viii)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는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를 제외한 모든 통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다. 이 정보도 「기능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통계조사별 사업체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1대1로 연결만 가능하다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하다.

일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능별 비교결과, 경제센서스 조사결과가 전산업에 대한 통계조사별 대상사업체를 연계하여 모집단명부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집계를 위한 특성별 그룹핑 단위 표준화 등을 위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본항목인 [그림 5-12]와 같은 다음과 같

14)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되어야 하며, 자세한 항목(안)은 제3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5-12] 일반사항 공통항목(안)

- 추출 및 그룹핑 정보(기능1)
 - 행정구역분류부호
 - 조직형태
 - 사업체구분
 - 산업분류 및 사업내용

- 연결정보(기능2)
 -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명
 - 대표자명 및 성별
 - 소재지
 -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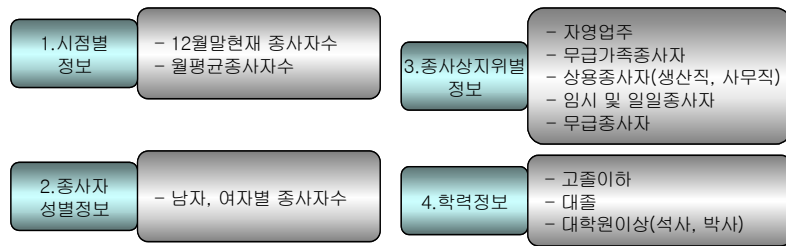
- 기타정보(기능3)
 - 창설년월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산업단지명
 - 재래시장명

〈표 5-10〉 일반사항 Check List (계속)

		서비스업 총조사 (본사용)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전문과학 기술	건설업 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
1. 식별 정보	조사구번호	○	×	×	×	×	×	×
	사업체일련번호	○	○	○	○	×	×	×
	고유번호	×	×	×	×	○	○	○
2. 명칭 정보	사업체명	×	○	○	○	×	×	○
	대표자명 및 성별	○	○	○	○	○	○	○
	본사명	○	×	×	×	○	○	○
3. 위치 정보	사업체소재지	×	○	○	○	×		○
	본사소재지	○	×	×	×	○	○	○
	행정구역분류번호	○	○	○	○	×	○	○
4.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	○	○	○	○	○	○
	조사담당자	○	○	○	○	○	○	○
	응답자	○	○	○	○	○	○	○
5. 사업체 형태정보	조직형태	○	○	○	○	○	○	○
	사업체구분	×	×	×	○	×	×	○
6. 창설 정보	창설년월	○	×	×	×	○	○	○
	사업장변동	×	×	×	×	×	×	×
7. 사업의 종류정보	사업내용	○	○	○	○	○	○	○
	취급(출하)품목, 영업종목	○	○	○	○	○	○	○
8. 기타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월	×	×	×	×	×	×	×
	홈페이지주소	○	○	○	×	×	×	×
	산업단지명 및 부호	×	×	×	×	×	×	×
	재래시장명 및 구분	×	×	×	×	×	×	×

나. 고용사항

고용사항은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관련 9개 통계조사의 고용정보는 ①시점별 정보 ②종사자성별 정보 ③종사상지위별 정보 ④학력정보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양적측면은 ①~③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파악이 가능하나, 종사자의 질적측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통계조사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분류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별 결과표를 중심으로 세부 조사내용을 비교한 후 항목표준화를 위한 방안과 특성항목을 추가하여 종사자의 질적측면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5-13] 세부내용별 고용사항

통계조사별 세부내용에 따른 고용사항을 살펴보면, ①「시점별정보」는 12월말현재 종사자수와 월평균종사자수로 구분하는데, 「12월말 현재 종사자수」는 AB.농림어업 CD.광업 및 제조업 I.운수업 부문에서만 조사되고 있고, 「월평균종사자수」는 I.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통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두 시점정보를 모두 조사하는 부문은 CD.광업 및 제조업 부문이다. 연중 종사자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월평균종사자수 조사결과에 의해서만도 가능하지만, 산업의 계절적 고용특성 때문에 월평균과 12월말현재 종사자수 정보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시점 현재(12월31일) 종사자수인 12월말 현재 종사자수 파악도 필요하여 두 정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②종사자 성별정보로는 남녀 구분 조사결과를 이용하는데, AB.농림어업 F.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종사자수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따라 연간통계조사에서 성별 고용 구조 파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AB.농림어업과 F.건설업 부문도 성별 종사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③종사상지위별 정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분과 일치시키기 위해 i)자영업주 ii)무급가족종사자 iii)상용종사자 iv)임시 및 일일 종사자 v)무급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운수업통계조사」의 경우 종사상지위별 구분을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합산하여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경우는 상근출자자, 상근고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로 구분하는 등 AB.농림어업 CD.광업제조업 I.운수업 부문에서 종사상지위별 구분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사항 비교결과를 외부로 제공되고 있는 결과표 측면에서 보면 <표 5-11>과 같은데 통계조사별로 특히, 종사상지위별 구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물론 사업체단위 통계조사별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구분을 i)자영업주 ii)무급가족종사자 iii)상용종사자 iv)임시 및 일일 종사자 v)무급종사자로 표준화된 공통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성항목을 통해 재 구분된 종사자수를 조사하는 이원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1> 고용사항 Check List

		사업체 기초 통계	광업및 제조업 통계 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4인 이하	5인 이상	전기	가스	수도	A~ F,I,N	G	H	K	O,P	J,L,M Q,R	
1.시점별 정보	12월말현재종사자수	×	○	○	○	○	○	○	×	×	×	×	×	×	
	월평균종사자수	○	○	○	○	○	○	○	○	○	○	○	○	○	
2.종사자 성별 정보	합계	○	○	○	○	○	○	○	○	○	○	○	○	○	
	남자	○	○	○	○	○	○	○	○	○	○	○	○	○	
3.종사상 지위별 정보	자영업주	○	○	○	○	×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상용종사자	○	○	○	○	○	○	○	○	○	○	○	○	○	
	생산직,사무직구분	×	○	○	○	○	○	○	×	×	×	×	×	×	
	임시및일용종사자	○	×	×	×	×	×	×	○	○	○	○	○	○	
	무급종사자	○	×	×	×	×	×	×	○	○	○	○	○	○	
4.학력 정보 ¹⁵⁾	고졸이하	×	×	×	×	×	×	×	×	×	×	×	×	○	
	대졸	×	×	×	×	×	×	×	×	×	×	×	×	○	
	대학원이상	×	×	×	×	×	×	×	×	×	×	×	×	○	

		서비스업 총조사 (본사용)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건설업 통계조사	운수업 ¹⁶⁾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
		1.시점별 정보	12월말현재종사자수	×	×	×	×	×
	월평균종사자수	○	○	○	○	○	×	△ ¹⁷⁾
2.종사자 성별 정보	합계	○	○	○	○	○	○	○
	남자	○	○	○	○	×	○	×
	여자	○	○	○	○	×	○	×
3.종사상 지위별 정보	자영업주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상용종사자	○	○	○	○	○	○	○(출자자 구분)
	생산직,사무직구분	×	×	×	×	○	○	×
	임시및일용종사자	○	○	○	○	○	×	○
	무급종사자	○	○	○	○	×	×	×
4.학력 정보	전화번호	×	×	×	×	×	×	×
	조사담당자	×	×	×	×	×	×	×
	응답자	×	×	×	×	×	×	×

15) 학력정보 : 서비스업총조사 대상사업체중 J.통신업 M.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조사
 16) 운수업통계조사 종사상지위별 정보 :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1)운수관련종사자 (2)기타종사자로 구분
 17)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임시 및 일일종사자에 대해서만 월평균 종사자수 조사

[그림 5-14] 고용사항 공통항목(안)

- 시점별 정보
 - 월평균 종사자
 - 12월말 현재 종사자

- 성별 정보
 - 남자, 여자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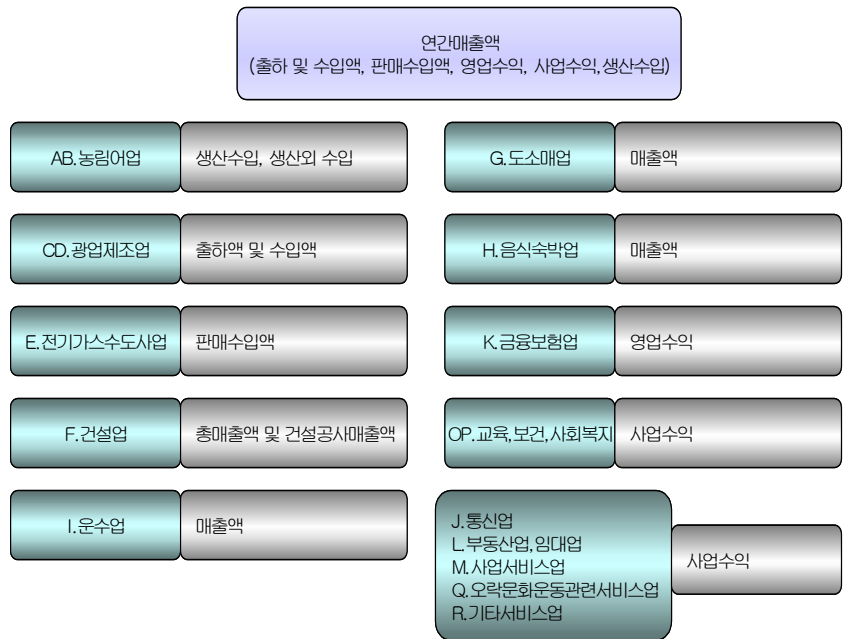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정보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종사자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무급종사자

- 기타 정보
 - 직종별 종사자수
 -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 :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자
 - 학력별 종사자수
 - 고졸이하
 - 대졸
 - 대학원이상 : 석사, 박사
 - 연령별 종사자수
 - 29세이하
 - 30~39세이하
 - 40~49세이하
 - 50세이상

다. 수입사항

수입사항은 경제순환과 산업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생산측면에서 볼 때, 주어진 기간동안 생산한 총생산량 개념으로서¹⁸⁾, 매출액, 출하액, 수입액,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의 용어로 모든 통계조사에서 총액은 조사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수입사항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림 5-15]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별 매출액 항목명은 다르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명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든 산업에 대한 수입사항을 통일하는 것은 응답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항목으로는 총액만 조사하고 특성항목에서 수입사항을 세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사항을 통계조사별로 보면 <표 5-12>과 같은 구성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림 5-15] 산업별 매출(수입)액 항목명

18)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p214-217

KOSIS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는 결과표 측면에서 보면, AB.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수입액 합계를 세부구성항목에 따라, 「생산수입」은 작물 재배, 축산업, 어업생산수입으로 「생산이외의 사업수입」은 가공업, 유통업, 영농대행수입, 어업서비스 수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표되고 있고, CD. 광업 및 제조업에서도 <표 5-12>구성항목별 수입액을 공표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산업은 매출액 총액만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항목으로는 총액만 조사하고 특성항목에서 수입사항을 세분하여 필요에 따라 조사해도 시계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5-12> 수입사항 구성항목

산업 및 통계조사	항목명	산업 및 통계조사	항목명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조사(AB)	생산수입	운수업 통계조사(주)(I)	여객수입
	생산이외 사업수입		화물수입
광업및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CD)	제품출하액(품목별)	서비스업총조사(J)	기타영업수입
	부산물제품판매액		우편 및 소포송달수익
	임가공수입액(품목별)		금융수익
산업총조사(E)	수리수입액	서비스업총조사(K)	전기통신사업수익
	연간전기판매수입액		기타사업수익
	연간판매량		보험료수익
건설업통계조사(F)	연간수입액	서비스업총조사(K)	이자수익
	총매출액		수수료수익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G)	건설공사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OP)	기타영업수익
	상품매출액		등록금,의료,사회복지수익
	수수료수입액		전입 및 기부금수익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H)	기타영업수입액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LMQR)	기타사업수익
	객실료수입액		사업수익
	음식료판매수입액		
	기타 수입액		

주) 운수업중 항공,철도,도시철도,파이프라인,철도운송지원업에 한하며, 기타는 매출액 합계만 조사

-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개정된 산업분류 대분류M에 해당)

- ☐ ①수입액 ②상품매출액 ③기타영업수입액 으로 구분 조사

수입사항(공통항목)에서 매출(수입)액 항목은 고용사항 항목과 달리 기업체단위 일괄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체별로 분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F.건설업 I.운수업 K.금융보험업의 경우가 그러한데, 2011년 본조사를 준비중인 일본¹⁹⁾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문제로 인해 전기 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 운송업, 방송업, 사회보험 사업단체는 기업체단위로 매출액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조사 등을 통해 추후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 사업체 종사자규모별 등 매출액관련 결과표와 연계하여 기업체단위 조사에 따른 배분 및 합산조사 방법은 2008년 하반기에 실시될 시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체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매출(수입)액 합계는 모든 사업체에서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수입사항 구성항목은 산업별로 특성화하여 조사하는 [그림 5-16]와 같은 공통항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6] 수입사항 공통항목(안)

- 매출(수입)액 정보
 - 매출(수입)액 합계만 조사

- 매출(수입)액 세부 정보
 - <표5-12> 산업별 수입사항 구성항목별 세부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특성항목에서 조사

19)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p203-p206

라. 비용사항

비용사항 항목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부가가치 등의 계산과 조사항목간 연관관계 점검을 위한 항목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매출액에 비해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부 구성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 조사대상 사업체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대분류별로는 「GH.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비중(46.0%)이 전 사업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기타 서비스업²⁰⁾을 포함하면 3/4 이상이 서비스업종 사업체이었으며, 동 업종의 조직형태로는 개인사업체가 종사자규모로는 1~4인이하 사업체가 90%정도의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규모도 1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다시말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의 비중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따라 비용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통계조사별로 비교한 후, 표준화되어야 할 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경영분석²¹⁾에 따르면 부가가치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분배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로 구성하며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세부 내용별 비용사항을 구분하면 i) 부가가치 구성항목과 ii) 기타 비용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5-15]와 같다.

통계조사별 부가가치 구성항목을 비교해 보면, ①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산업총조사 5인미만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도사업체」는 연간급여액만 조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세분화하지 않고 인건비로 합산 조사하고 있고,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만 조사하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비용관련 항목이 없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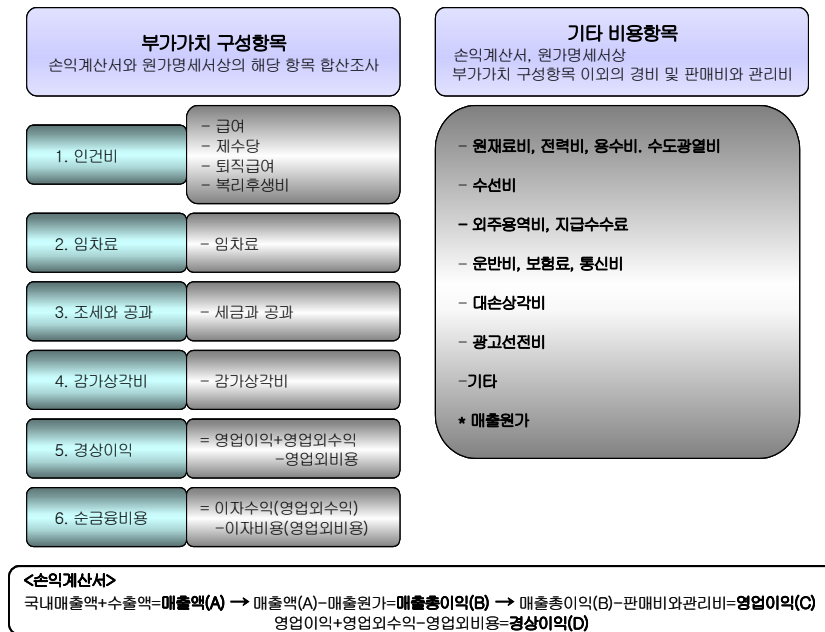
20) 기타서비스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1) 한국은행, 2006기업경영분석, p57

이외의 통계조사는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세부조사하고 있다.

②임차료 ③조세와공과 ④감가상각비는 「산업총조사 5인미만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와 「농어업법인사업체」 및 「수도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가치 구성항목 중 ①인건비~④감가상각비는 산업별로 AB.농림어업 CD.광업 및 제조업(5인미만) E.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별 자료가 조사되고 있다.

⑤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차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F.건설업 GH.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I.운수업 J.통신업~R.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에서 영업이익만 조사하고 있으며 AB.농림어업법인사업체는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경상이익도 조사하고 있으며, ⑥순금융비용은 모든 산업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림 5-17] 세부 내용별 비용사항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공표하는 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로서,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

사22)」는 생산액·주요생산비로 계산하며, 「건설업통계조사」의 부가가치는 가산법을 적용하여 공사비용 항목중 부가가치 관련 8개 항목23)을 합산하였고, 「운수업통계조사」도 건설업과 유사한 9개 항목24)을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기타 조사에서는 부가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표 5-13〉 비용사항 Check List

부가가치 구성항목 25)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항목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26)					
			광업및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4인이하	5인이상				
인건비	노무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급여	⑭기타	연간급여액27)	⑦급여총액	⑦급여총액	⑦급여총액	
		제수당						
임차료		퇴직급여	⑦퇴직금		⑧퇴직금	⑧퇴직금	⑧퇴직금	
		복리후생비	⑧복리후생비		⑨복리후생비	⑨복리후생비	⑨복리후생비	
조세와공과		임차료	④임차료		⑩임차료	⑩임차료	⑩임차료	
감가상각비		조세와공과	⑩세금과공과		⑬세금과공과	⑬세금과공과	⑬세금과공과	
경상이익		감가상각비	⑭기타		⑫감가상각비	⑫감가상각비	⑫감가상각비	
순금융비용	손익계산서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대손상각비	⑪대손상각비		⑬대손상각비	⑭기타	⑬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⑫광고선전비		⑭기타	⑭기타	⑭기타	
		전력비	③전력비	②연료, 전력 용수비	③전력비	②전력비	③전력비	③전력비
		연료비	②연료비		②연료비	⑤연료비	④연료비	④연료비
		수도광열비	④용수비	③수선비 및 위탁생산비	④용수비	③용수비	②용수비	②용수비
		수선비	⑥수선비		⑥수선비	⑥수선비	⑥수선비	⑥수선비
		외주용역비	⑤외주가공비	⑤외주가공비	⑤외주가공비	⑭기타	⑤외주공사비	⑤외주공사비
		지급수수료				⑬지급수수료		
		운반비	⑬운반·하역·보관비					
		보험료			⑭기타	⑭기타	⑭기타	⑭기타
		통신비	⑭기타					
기타								
제조원가	재료비	①원재료비	①원재료비	①원재료비	①원재료비	①원재료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22) 생산액 = 제품출하액 -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증감
주요생산비 = 원재료비+전력비+용수비+위탁생산비+수리유지비+연료비
- 23) 건설업통계조사 부가가치 항목(8개) : 임금 및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조세와공과, 건설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
- 24) 운수업통계조사 부가가치 항목(9개) :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 대손상각, 영업이익, 국내선박용선료, 부가가치세
- 25)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의 부가가치 구성항목임
-기업경영분석통계는 분배측면에서 접근하여 ①경상이익 ②인건비 ③순금융비용 ④ 임차료 ⑤조세공과 ⑥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항목을 합산하여 산출
- 26) 산업총조사(수도사업) : 제조원가 항목은 세분되나, 그 외의 경비는 기타로 합산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만 조사

〈표 5-13〉 비용사항 Check List (계속)

부가가치 구성항목 28)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항목	운수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²⁹⁾					
					GH도소매 음식숙박	O.P 교육보건업	K.금융 보험업	기타 JLMQR		
인건비	노무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 비	급여 계수장	②급여총액	⑦임금및급료	②인건비	㉠급여총액	㉠급여총액	㉠급여총액	㉠급여총액	
		퇴직급여	③퇴직급여	⑧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④복리후 생비	⑨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임차료	⑥임차료	⑩지급임차료	③임차료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	
조세와공과		조세와공과	⑧세금과 공과	⑫조세와공과	④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과공과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⑤감가 상각비	⑩감가 상각비	⑤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경상이익 순금융비용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건설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 비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 비	대손상각비			⑤잡비	⑥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⑫잡비			⑦광고선 전비				
		전력비								
		연료비	①재료비		④수도광열 비					
		수도광열비	⑫잡비			⑨기타				
		수선비	⑨수선비	③수선비			㉧기타경비	㉧기타경비	㉧기타경비	㉧기타경비
		외주용역비	⑫잡비	⑥외주공사비						
		지급수수료	⑩요금 및 수수료		⑤잡비	⑧지급 수수료				
		운반비	⑫잡비			⑨기타				
		보험료	⑦보험료							
통신비	⑫잡비									
기타										
제조원가 명세서	재료비	①재료비	①원재료비							
손익계산 서	매출원가			①재료 매입비	②매출원가	-	-	매출원가		

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개정된 산업분류 대분류M에 해당)

☞ 부가가치 구성항목 : ①인건비 ②임차료 ③조세와공과 ④감가상각비

27) 산업총조사(4인이하)

-연간급여액은 주요생산비가 아닌 종사자수 항목에서 조사

28)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의 부가가치 구성항목임

-기업경영분석통계는 분배측면에서 접근하여 ①경상이익 ②인건비 ③순금융비용 ④
임차료 ⑤조세공과 ⑥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및제조원가명세서합산

29) 서비스업총조사 : 손익계산서 항목만 조사(기타 통계조사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난 해당항목을 합산하여 조사)

- 영업이익= 매출액(영업수익 또는 사업수익) -영업비용

☞ 영업비용 : 매출원가(금융,보험업은 금융보험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 금융보험업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외에 금융 및 보험비용조사

· 금융비용 :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금융비용

· 보험비용 : 보험금비용, 환급금비용, 책임준비금전입액, 기타보험비용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⑤외주비 ⑥기타영업비용
 손익계산서 : ⑦재료 및 상품매입비 만 조사함

KOSIS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는 비용사항을 보면, 부가가치 공표 여부에 따라 세부항목 공표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CD. 광업 및 제조업」은 주요생산비 구성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있으며, 「F.건설업 I.운수업」도 부가가치 구성항목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통계조사는 영업비용 합계와 비용사항 항목을 그룹핑하여 <표 5-14>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 5-14> 비용사항 제공현황(KOSIS)

통계조사명	공 표 항 목	비 고
광업및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 연료비	주요 생산비
건설업 통계조사	-임금 및 급료,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지급입차료, 조세와공과, 건설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	부가가치 구성항목
운수업 통계조사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입차료, 조세, 대손상각, 영업이익, 국내선박용선료, 납부부가가치세	부가가치 구성항목
서비스업 총조사	-인건비, 입차료, 세금과공과, 감가·대손상각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만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인건비, 입차료, 기타경비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영업이익, 경상이익 합계만 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비용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개정된 산업분류 대분류M에 해당)
 ☞ 2008년도 신규통계로서 KOSIS 제공현황 없음

비용사항 구성항목을 통계조사별로 비교결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⑤경상이익과 ⑥순금융비용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경제센서스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①인건비 ②임차료 ③조세공과 ④감가상각비 항목만 표준화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결산자료를 근거로 ⑤경상이익과 ⑥순금융비용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부문도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비용항목은 <표 5-13>에서와 같이 통계조사별로 세부 구성항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가가치 구성항목과 병행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통계조사별로 기 공표된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항목과 시계열 유지함은 물론 2008년부터 일부 구성항목이 변경될 기업경영분석과 개념일치를 통한 비교성 확보를 위해 [그림 5-18]과 같이 비용사항 공통항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18] 비용사항 공통항목³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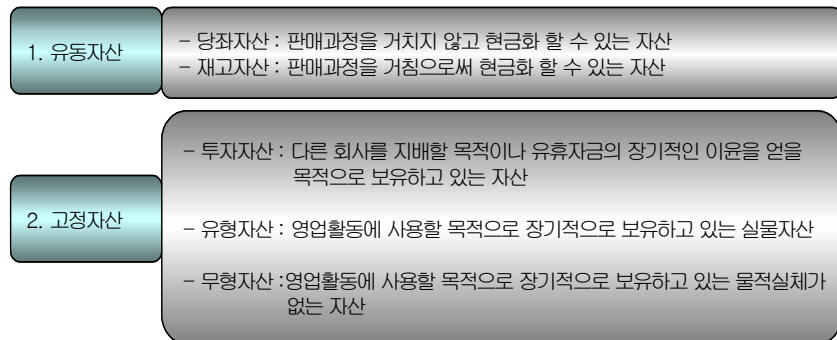
- 부가가치 구성항목 정보
 - 인건비
 - 임차료(제외)→대손상각비(추가)
 - 조세와 공과, 감가상각비
 - 경상이익→영업이익
 - 순금융비용(제외)

- 기타 비용항목 정보
 - 원재료비(재료매입비)
 - 연료전력용수비
 - 수선비
 - 외주용역(가공)비
 - 지급수수료
 - 광고선전비
 - 임차료
 - 보험료
 - 국내선박용선료
 - 기타
 - * 매출원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30)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비용임
 -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부가가치 = 제품출하액 + 완제품 및 재공품 재고증감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
 - 건설업통계조사 부가가치 = 임금 및 급여+퇴직급여총담금전입액+복리후생비+감
 가상각비+지급임차료+조세와공과+건설영업이익+납
 부부가가치세
 - 운수업통계조사 부가가치 = 인건비+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임차료+조세+대손상
 각+영업이익+국내선박용선료+납부부가가치세

마. 자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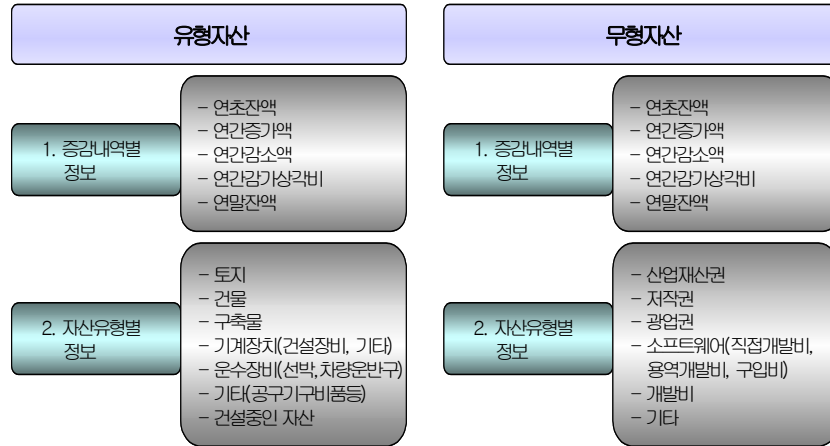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이란 직·간접적으로 미래에 현금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지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서비스잠재력(service potential)이라고도 하는데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은 생산 및 판매활동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며, 만약 이를 매각할 경우 직접적으로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림 5-19]과 같이 자산을 분류하고 있다³¹⁾.



[그림 5-19] 자산의 분류

위와 같은 자산분류중 통계청에서는 고정자산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그림 5-19]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통계조사별 항목비교 및 결과표를 중심으로 비교한 후 공통항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송상엽, 회계원리(제6판), p136-p137



[그림 5-20] 세부 내용별 자산사항

자산은 ①증감내역별 정보와 ②자산유형별 정보로 구분되는데 우선 「증감내역별 정보」를 보면, 증감내역은 i)연초잔액 ii)연간증가액 iii)연간감소액 iv)연간감가상각비 v)연말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감가상각비로 계산된다.

통계조사별로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5인미만), 서비스업총조사(A~F,I,N),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v)연말잔액은 조사되고 있으며, ii)연간증가액~iv)연간감가상각비는 <표 5-15>와 같이 통계조사별로 조사유무에 차이가 있다. 조사결과의 정도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상기 5개 구분에 의해 증감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국부통계 추계시 현재는 한국은행의 자본재별 투자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자산유형별 자산액이 역사적 가격인데 비해, ii)연간증가액은 당해년가격으로서 전산업에 대한 ii)연간증가액을 조사할 경우 자본재×경제활동별 투자매트릭스(경상)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5〉 자산사항 Check List

	사업체 기초통계	광업및 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³²⁾					
			4인 이하	5인 이상	전기	가스	수도	A~F, I, N	G	H	K	O, P	J, L, M, Q, R
(1)유형자산	x	o	o	o	o	o	o	x	o	o	o	o	o
자산 유형별	①토지	x	o	o	o	o	o	o	x	o	o	o	o
	②건물	x	o	o	o	o	o	o	x	o	o	o	o
	③구축물	x	o		o	o	o	o	x				
	④기계장치	x	o	o	o	o	o	x	o	o	o	o	o
	-건설장비	x											
	-기타 기계장치	x											
	⑤차량선박운반구	x	o	o	o	o	o	x	o	o	o	o	o
	-선박	x											
	-차량운반구	x											
	⑥기타(공구기구비품)	x	o	o	o	o	o	x	o	o	o	o	o
⑦건설중인자산	x	o	x	o	o	o	o	x	o	o	o	o	o
증감 내역별	①연초잔액	x	o	x	o	o	o	x	x	o	o	o	o
	②연간증가액	x	o	x	o	o	o	x	x	o	o	o	o
	③연간감소액	x	o	x	o	o	o	x	x	o	o	o	o
	④연간감가상각비	x	o	x	o	o	o	x	x	o	o	o	o
	⑤연말잔액	x	o	o	o	o	o	o	x	o	o	o	o

	서비스업총조사 (본사용)	건설업 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	
(1)유형자산	o	o	o	o	
자산 유형별	①토지	o	o	o	
	②건물	o	o	o	
	③구축물		o	o	
	④기계장치	o	o	o	⑥기타(공구기구비품)와 합산조사
	-건설장비				
	-기타 기계장치				
	⑤차량선박운반구	o	o	o	o
	-선박				
	-차량운반구				
	⑥기타(공구기구비품)	o	o	o	o
⑦건설중인자산	o	o	o	x	
증감 내역별	①연초잔액	o	o	o	x
	②연간증가액	o	o	o	x
	③연간감소액	o	o	o	x
	④연간감가상각비	o	x	o	x
	⑤연말잔액	o	o	o	o

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개정된 산업분류 대분류M에 해당)

☐ 자산유형별 : ①토지 및 건물 ②기계장치 ③차량운반구
증감내역별 : ②연간증가액 만 조사함

3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유형고정자산 항목이 없음

[그림 5-21] 자산사항 공통항목(안)

- 유형자산 유형별 정보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선박운반구
 - 공구기구비품기타
 - 건설중인 자산

- 무형자산 유형별 정보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개발비
 - 소프트웨어개발비
 - 직접개발비
 - 용역개발비
 - 기타 개발비
 - 기타
 - 소프트웨어 구입비
 - 기타

- 증감내역별 정보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말잔액

제3절 조사표 공통항목(안) 설계

1. 공통항목(안) 선정기준

산업구조통계의 주된 관심사인 생산과 분배측면에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통계청에서 실시중인 산업구조통계간 비교성 및 일치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림 5-22]과 같은 관점에서 선정한다.

[그림 5-22] 공통항목(안) 선정기준

- 모집단 명부로서의 기능수행
 - 전산업에 대한 모집단 명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선정
 - 매년 실시되는 산업구조 통계조사결과가 update 가능토록 연결정보 항목을 선정

- 일관성, 비교성 확보 및 시계열유지
 - 경제센서스의 기본목적인 산업간 동일한 기준과 시점조사를 통해 일관성 및 비교성 확보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
 - 경제센서스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동안 실시되는 산업구조통계(통계청)와 시계열 유지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선정

- 산업구조 파악이 가능한 항목 선정
 - 생산과 분배측면을 고려하여 고용, 생산 및 비용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구조통계조사를 참고하여 선정

2. 공통항목(안)

공통항목은 전산업에서 공통으로 조사되는 항목으로서, 생산과 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통계조사간 항목 표준화와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과 제2절 「산업구조통계조사 현황」에서 검토된 결과를 기초로 ①일반사항 ②고용사항 ③수입사항 ④비용사항 ⑤자산사항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가. 일반사항

추출 및 그룹핑 정보
-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산업분류 및 사업내용

연결정보
-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명, 대표자명 및 성별, 소재지, 전화번호

기타정보
- 창설년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산업단지명, 재래시장명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일련번호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부호	
- - - - -		- - - - -		- - - - -					
1.사업체명						재래시장명		재래시장부호	
2.대표자명									
3.소재지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4.창설년월 년 월			
5.사업장변동		(1) 사업장 존속 (2) 사업장 신설 및 누락 (3) 대상외 (4) 사업장 철거 및 폐쇄				6.조직형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3) 회사외법인 (4) 국가지방자치단체 (5) 비법인단체			
7.사업체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 본점 (3) 공장, 지사(점), 영업소				7-1.본사명 및 소재지 (1) 본사명 : (2) 소재지 : (3) 전화번호 :			

8. 사업의 종류				
8-1. 산업대분류	8-2. 사업내용 및 산업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수도사업 E.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영상정보업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사업 R.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 단체,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사업내용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산업분류	
	주 산 업			
	부 산 업			
	부 산 업			

나. 고용사항

- 시점별 정보
 - 월평균 종사자, 12월말 현재 종사자
- 성별 정보
 - 남자, 여자로 구분
- 종사상지위별 정보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 기타 정보
 - 직종별 종사자수
 - 사무직 및 기타, 생산직(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자)
 - 연령별 종사자수
 - 29세이하, 30~39세이하, 40~49세이하, 50세이상

9.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12월 현재 종사자수			(2) 월평균 종사자수	(3) 연간 급여액
	① 남자	② 여자	계		
① 자영업주					*****
② 무급가족종사자					*****
③ 상용종사자					
④ 임시 및 일일종사자					
⑤ 무급종사자					*****
합 계					

9-1. 직종별 종사자수

		(1) 12월 현재 종사자수			(2) 월평균 종사자수
		① 남자	② 여자	계	
(1) 생산직 및 기술직	① 기술자				
	② 기능공				
	③ 단순노무자				
	소 계				
(2) 사무직 및 기타					
합 계					

9-2. 연령 및 성별 종사자수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계
합 계					
남 자					
여 자					

다. 수입사항

매출(수입)액 정보
 - 매출(수입)액 합계만 조사

매출(수입)액 세부 정보
 - <표5-16> 산업별 수입사항 구성항목별 세부수입
 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특성항목에서 조사

10. 연간 총매출액 (출하액, 판매액, 수입액, 예산집행액 등)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표 5-16> 수입사항 구성항목

산업 및 통계조사	항목명	산업 및 통계조사	항목명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AB)	생산수입	운수업 통계조사주 (I)	여객수입
	생산이외 사업수입		화물수입
광업및제조업통계 조사 산업총조사(CD)	제품출하액(품목별)	서비스업 총조사 (J)	기타영업수입
	부산물폐품판매액		우편 및 소포송달수익
	입가공수입액(품목별)		금융수익
산업총조사(E)	수리수입액	서비스업 총조사 (K)	전기통신사업수익
	연간전기판매수입액		기타사업수익
건설업통계조사(F)	연간판매량	서비스업 총조사 (K)	보험료수익
	연간수입액		이자수익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G)	총매출액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OP)	수수료수익
	건설공사매출액		기타영업수익
	상품매출액		등록금, 의료, 사회복지수익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H)	수수료수입액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LMQR)	전입 및 기부금수익
	기타영업수입액		기타사업수익
	객실료수입액		사업수익
	음식료판매수입액		
	기타 수입액		

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계조사(개정된 산업분류 대분류M에 해당)
 □ ①수입액 ②상품매출액 ③기타영업수입액 으로 구분 조사

마. 자산사항

- 유형자산 유형별 정보
 - 토지, 건물및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선박운반구
공구기구비품기타, 건설중인 자산
- 무형자산 유형별 정보
 - 산업재산권, 저작권,
 - 개발비(소프트웨어개발비, 기타)
 - 기타(소프트웨어 구입비, 기타)
- 증감내역별 정보
 -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액, 연말잔액

12. 유무형자산

유형자산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비	연말잔액
① 토지					
② 건물 및 건축물					
③ 기계장치					
④ 차량선박운반구					
⑤ 공구기구비품기타					
⑥ 건설중인자산					
합 계					
무형자산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비	연말잔액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개발비	-소프트웨어(직접)				
	-소프트웨어(용역)				
	-기타 개발비				
④ 기타					
합 계					

3. 공통항목 작성요령

2. 공통항목(안)에서 제시한 공통항목에 대한 항목별 작성요령은 ① 일반사항 ②고용사항 ③수입사항 ④비용사항 ⑤자산사항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반사항

행정구역분류부호

- 조사대상 기준일 현재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참조하여 시도(2), 시군구(3), 읍면동(2) 분류부호 7자리를 기입

조사구번호 및 일련번호

- 기본도 및 조사구요도상 사업체에 부여된 조사구번호와 조사구내 일련번호를 기입

산업단지명 및 산업단지부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명 및 산업단지부호를 분류부호 책자를 참조하여 기입
- 종류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재래시장명 및 재래시장부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등을 분류부호 책자를 참조하여 기입
- 종류 :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1. 사업체명

- 사업체명은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영업소,지사(점),출장소의 경우 동 명칭도 사업체명 뒤에 기입
-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대표자명을 기입

2. 대표자명

-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 1명을 기입
- 지사(점), 공장, 영업소의 경우 지사(점)장, 공장장, 영업소장 등의 이름을 기입

3.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법정동명을 기입

4. 창설년월

- 사업체가 산업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입
- 지사(점), 공장, 영업소 등은 해당 지사(점), 공장, 영업소의 영업개시 시점을 창설년월로 기입

5. 사업장변동

- 현재의 장소를 중심으로 임의의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입하는 항목으로서,
①사업장존속 : 사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사업체가 있었던 현재 장소에 금년도에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②사업장신설및누락

- 전년도에 사업체가 없던 현재 장소에 금년도에 사업체가 새로 입주한 경우
- 현재의 장소에서 전년도 조사시 누락된 사업체를 신규로 조사한 경우

③대상의 : 전년도 조사시 조사되었던 사업체중 현재 장소에 있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④사업장철거 및 폐쇄 : 전년도에 사업체가 있었던 장소가 철거, 폐업 등의 사유로 금년도 조사시 현재의 장소에 사업체가 없는 경우

6. 조직형태

-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기입

- ①개인사업체 :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1인 이상의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 ②회사법인 : 상법상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에 속하는 사업체
- ③회사이외의 법인
 -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 조직구성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 ④국가·지방자치단체
 -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입법부, 사법부, 국공립학교법인, 국공립의료법인 등
- ⑤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종친회 등

7. 사업체구분

- 사업체 구분을 기입

- ①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지사(점), 공장, 영업소 등이 없는 1기업 1 사업체
- ② 본사, 본점 : 다른 장소에 1개 이상의 지사(점), 공장, 영업소 등을 두고 이를 총괄하는 사업체
-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 다른 장소에 본사, 본점 등이 있고 이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산하사업체

7-1. 본사명 및 소재지

- 6항 조직형태가 「②회사법인」 이면서, 7항 「③공장, 지사(점), 영업소」에 해당되는 경우 본사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

8. 사업의 종류

8-1. 산업대분류

-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조하여 사업체의 19개 산업대분류중 해당 산업대분류에 표시

8-2. 사업내용 및 산업분류

- 사업내용

해당사업체가 영위하는 산업활동을 기입하는 항목으로서, 산업대분류내 활동을 주사업과 부사업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

예) 산업대분류에 G.도소매업에 표시된 경우 : 주유소운영, 슈퍼마켓운영, 금은방운영 등으로 기입

-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산업활동의 생산품, 취급품목, 서비스의 종류 등 매출비중이 큰 주요내용을 기입

예) G.도소매업, 주유소운영으로 기입된 경우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기입

- 산업분류

산업대분류, 사업내용,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을 참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에서 산업분류를 검색하여 기입

2. 고용사항

9.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해당 사업체에 조사대상 기간동안 근무한 종사자수중 동 사업체에서 급여가 지불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상 지위별로 연간급여액 합계를 기입

- 시점별 구분

· 12월 현재 종사자수 : 조사기준연도 12월 현재 근무한 종사자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

· 월평균종사자수 : 조사대상기간중 월평균 근무한 종사자수를 기입 기록·감독

- 종사상 지위별

①자영업주 :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를 말하며, 그 이외 조직형태의 대표자는 상용종사자로 구분

②무급가족종사자 : 개인사업체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③ 상용종사자 : 사업체에 상시 고용된 종사자로서 개인사업체이외의 대표자, 유급임원 등도 포함
- ④ 임시및일일종사자 : 고용주와 1년미만의 고용기간을 정하였다더라도 임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 ⑤ 무급종사자 : ② 무급가족종사자 이외의 종사자중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는 경우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봉사료만 받는 종사자

9-1. 직종별 종사자수

- 종사상지위상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종사자수를 기입
 - (1) 생산직 및 기술직
 - 생산과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
 - 생산공정 및 시공활동 등의 특정단계를 기록·감독
 - 차량운전, 정비업무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자로 구분하여 기입
 - (2)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 및 기술직 이외의 종사자로서, 관리업무 및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

9-2. 연령 및 학력별 종사자수

- 종사상지위별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연령과 학력별로 구분하여 종사자수를 기입
 - (1) 연령구분
 - ① 29세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이상으로 구분

3. 수입사항

10. 연간총매출액

- 조사기준연도 1년간 제품의 생산,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활동으로 얻은 총수입
 - 업종에 따라 수입액, 판매액, 기성액, 출하액, 예산집행액, 입장료 등을 기입(세부 수입내용은 <표12>참조)
 - 동 조사는 사업체단위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실적이 아닌 사업체단위로 분리 기입

4. 비용사항

11.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한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
 - ① 인건비 : 1년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된 노무비와 인건비를 기입
 - ② 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란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수불능채권을 비용으로 처리
 - ③ 조세와 공과 : 1년동안 납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범칙금 총액을 기입(인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 ※ 소득세, 법인세, 납부부가가치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제외

11.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계속)

- ④ 감가상각비 : 자산의 사용, 마모, 진부화 등으로 인해 감소된 경제적가치를 평가하여 비용으로 차감된 비용을 기입
- ⑤ 원재료비 :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의 구입비용을 기입
- ⑥ 연료, 전력, 용수비 : 생산 및 판매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한 연료, 전력, 용수비(수도비)를 기입
- ⑦ 수선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 ⑧ 외주용역(가공)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시킨 대가로 지급한 비용
 -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 ⑨ 지급수수료 :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하는 비용으로서 세무수수료, 특허권사용료, 법률자문비 등
- ⑩ 광고선전비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광고물 구입비, 광고제작의뢰비, 광고물배포비, 간판제작비, 법인결산공고료 등)
- ⑪ 임차료 :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사무실 임차료, 복사기·팩스 임차료, 차량렌탈비, 창고·주차장 임차료 등)
- ⑫ 보험료 :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의료보험은 해당하지 아니함),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등을 지급한 비용

11.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계속)

- ⑬ 국내선박용선료 :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
- ⑭ 기타 : 이상 열거한 이외의 기타비용

5. 자산사항

12. 유·무형자산

<증감내역별 구분>

- ①연초잔액 : 기준연도 1월1일 현재 자산액
- ②연간증가액 : 기준연도 1년간 취득 및 대체된 자산액
- ③연간감소액 : 기준연도 1년간 처분 및 손실된 자산액
- ④감가상각비 : 기준연도 1년간 자산의 사용, 마모, 진부화 등으로 인해 감소된 경제적가치를 평가하여 비용으로 차감된 비용
- ⑤연말잔액 : 기준연도 12월31일 현재 자산액으로서, 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감가상각비

<자산유형별 구분>

- 유형자산 : 영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으로서 판매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산
 - ①토지 : 대지, 임야 등으로서 영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및 취득한 자산

12. 유·무형자산(계속)

- ②건물및건축물 : 영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장, 영업소, 창고, 도로, 철도, 탱크, 송유관 등
- ③기계장치 : 기계설비로서 기계장치, 발전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와 부설설치물 등
- ④차량선박운반구 : 해상운반구(화물선, 유조선 등), 육상운반구(자동차, 철도차량 등), 항공기, 헬리콥터 등
- ⑤공구기구비품기타 : 1년이상 내구성을 갖고 있는 공구, 기구, 사무용품 등
- ⑥건설중인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 무형자산 : 영업 및 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 ①산업재산권 :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②저작권 : 지적 및 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③개발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기타로 구분 기입
- ④기타 : 기타 무형자산

제4절 결론 및 제언

산업구조통계는 분산형 통계조사 시스템에서 특수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개별 통계조사의 모집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통계의 기초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계로서 국가통계발전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산업이나 특정 계층별 현황 및 구조파악에

도 활용됨은 물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 등 주요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형 통계작성 시스템으로 인해 통계조사별 기준 및 항목 등의 차이로 일치성과 비교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이 제기되어 통계청에서는 「2010년 기준 경제센서스」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센서스 실시에 따른 시계열유지 방안의 일환으로 조사표설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통계조사 현황」과 「조사표 공통항목(안) 설계」를 검토하였다. 「제2절. 산업구조 통계조사 현황」에서는 통계조사별 개요(포괄범위, 조사단위, 조사방법 등)와 조사항목을 ①일반사항 ②고용사항 ③수입사항 ④비용사항 ⑤자산사항으로 구분하여 비교함은 물론 KOSIS로 외부로 제공되는 항목별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3절에서는 공통항목(안) 선정을 위해 통계조사별 항목표준화 및 시계열 유지측면에서 선정기준과 항목비교 결과를 토대로 12개 공통항목과 작성요령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70%가 서비스업종의 개인사업체로서, 종사자규모는 1~4인 및 매출액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조사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중 실시될 시험조사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에 대한 공통항목 작성을 위한 현장질의 방법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 사업체 실무담당자로부터 기업체단위의 매출액과 비용 및 자산을 사업체단위로 배분 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조사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설계 방안중 특성항목에 대한 사항은 공통항목(안)을 중심으로 통계조사별 담당부서에서 특성항목을 제안하여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 및 겸업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연구는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i)모집단정비 방안 연구 ii)사업장변동 항목을 이용한 조사기준연도이후 변동된 사업체의 포함에 관한 연구 iii)결과표 설계를 중심으로 집계자료의 비밀보호 등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진면외(2007),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산업연구원
- [2] 통계청(2007), 「200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침서」
- [3] 통계청(2007), 「2006년기준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지침서」
- [4] 통계청(2006), 「200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지침서」
- [5] 통계청(2008), 「2007년기준 건설업통계조사 지침서」
- [6] 통계청(2007), 「2006년기준 운수업통계조사 지침서」
- [7] 통계청(2007), 「2006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지침서」
- [8] 통계청(2007),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지침서」
- [9] 통계청(2004), 「2003년기준 산업총조사조사 지침서」
- [10] 통계청(2008), 명칭별통계,
http://www.kosis.kr/domestic/research/do02_index.jsp
- [11] 한국은행(2007), 「2006년기준 기업경영분석」
- [12] 송상엽(2003), 「회계원리(제6판)」